

과천시 고시 제2025-66호

과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변경 고시

국토교통부 『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』 1-1-2 규정 및 『과천시 도시계획 조례』 제19조에 의거하여

『과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』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5. 5. 8.

과 천 시 장

■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(변경)

관련조항	기 정	변 경
II.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2장 기반시설계획	2) “주택법” 및 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”에 따른 주택사업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 ① 주택법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기부 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8%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건축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 (인가)권자가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토지 면적 비율의 50%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높일 수 있다. ②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9%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승인(인가)권자가 해당 사업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의 50%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 부담수 준을 높일 수 있다. ③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을 그 각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(예: 제2종일반주거지역→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) 하는 경우, 승인(인가)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반 시설 기부채납 최대 상한에 10%p까지 추가할 수 있다. ④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을 그 각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(예: 제2종일반주거지역→상업지역으로 변경)을 하는 경우, 승인(인가)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	“삭제”

붙임 『과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』 (변경) 1부.

※ 『과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』은 과천시 홈페이지-[분야별]-[도시/부동산]-[도시계획]-
[지구단위계획자료]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